



별지 130 호 - 도면, 설계도, 및 입면도 필수 사양

도면

신청자는 DC 인가 측량기사나 DC 측량사무소(Office of Surveyor)가 증명하고 일정한 비율로 그린 도면을 **(1)장의 원본 및 (20)장의 사본** (11 x 17 인치 초과하지 않는)을 제시해야 한다. 도면에는 모든 치수가 포함되어야 하며 잉크로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며 모든 건물, 추가 구축 및 현존/계획중인 구조물의 스케치가 포함되어야 한다. 도면 위의 시설 위치 정확도는 소유자가 자체 인증을 하거나 기록이나 구획의 소유자를 위해 인가된 대리인이 인증을 해야한다. 도면은 다음과 같은 직무권한범위를 포함해야 한다:

- 1). **모든 현존 구조물.**
- 2). 모든 새로운 건물 및 구조물.
- 3). 현존 건물 공간 밖의 지상 4 피트(1.22 미터)이상 높이의 영구 구조물
- 4). 공공장소로 돌출된 건축 양식이나 개조.
- 5). 36 인치 (0.914 미터) 이상 높이의 옹벽 건축.
- 6). 소비된 작업량에 관련없이 새로운 주차장 설비.
- 7). 모든 주차 공간, 정박지 및 주차나 적재구역 시설 진입로의 숫자, 크기, 형태 및 위치.

설계도 및 입면도

신청자는 토지의 방향을 북쪽으로 보이는 일정한 비율로 스케치, 계수적으로 지표 및 도표로 묘사되고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설계도 및 입면도를 **one (1)장의 원본과 (20)장의 사본** (11 x 17 인치 초과하지 않는)을 제시해야 한다:

- 1). 건설하고자 하는 토지의 형태, 규모, 및 지형을 현재 지상 높이 및 상정되는 건설물의 지상 높이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용도지역규제 Title 11 DCMR 의 높이규제에 준수하는지 검토할 수 있게 표시.
- 2). 토지와 인접하는 거리 및 공공 통행의 넓이를 높이 측정 포인트를 더하여 1910 년 높이법 개정안에 준수하는지 검토할 수 있게 표시.
- 3). 모든 현존 및 상정되는 건설물의 설계도에 형태 및 위치를 규모, 방향 및 토지까지의 거리로 표시하여 상정되는 건설물의 규모 및 위치에 애매성 없이 정의할 수 있도록 표시.
- 4). 모든 현존 및 상정되는 건설물의 평면도 및 입면도에 애매성 없이 정의할 수 있도록 규모로 표시.
- 5). 설계도에 주차 및 적재구역, 시설 규모 계산법 등 표시.

비고: 향소의 경우, 향소 사례에 필요한 부분만 포함 요구.

정보 배포 목적용 별지



장애인보호법(ADA)이나 공정주택거래법에 의해 타당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, 별지 155 호-타당한 지원 요청-를 작성